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법·제도 동향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등에 대한 법규 개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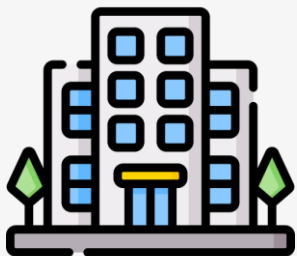
규정 변경의 취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및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수준 완화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본 카드뉴스에서는 규정 변경 내용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 전문은 카드뉴스의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상향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I.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상황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상황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하여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원칙	자산 5천억원 이상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자산 1천억원 이상 ①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외감법 시행령 제4조

II.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리조치 가중사유 예외규정 추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감리조치 가중 대상 변화

- 감리조치 대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 조치수준 가중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회사
- 가중조치 예외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공시 또는 개선한 회사(*)

(*) [참고] 가중조치 예외 대상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감리조치 가중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이 있더라도 감리조치 수준 가중대상 예외 규정 신설 [예외 조건] 증선위 감리 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공시 한 경우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개선한 경우

III.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 감면대상·감경범위 확대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감경범위 확대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방안

감면대상 확대

(기존)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

(추가) 부정행위를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

감경범위 확대

(기존) 3가지 요건(*) 모두 갖춘 경우 → 1단계 감경

(변경) 3가지 요건 모두 갖춘 경우 → 2단계 감경&검찰고발 대상 제외

(추가)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 1단계 감경

(*) 3가지 요건

- ① 부정행위의 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 ② 증선위 등이 정보 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 할 것
- ③ 증거제공 및 조사 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부록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체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상향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③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④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정
- ⑤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조정

④, ⑤ 개정 내용



- ④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정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관련 기본조치 하향 및 감경사유 추가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조치수준 1단계 하향
 - 지연제출 3일내 자체 시정할 시 1단계 감경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누락 금액의 중요도에 따른 조치수준 차등화
 - 위반사항 2개 이상인 경우 양정기준 명확화
- ⑤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조정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 변경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기준일 시점의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인원수로 계산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카드뉴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 하단의 **건의·문의** 탭을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삼성KPMG ACI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